

〈書 評〉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1962)

by

Alexander M. Bickel

빅클教授의 “The Least Dangerous Branch”를 지금紹介하는 것은 때 늦은 感이 없지 않다. 이 冊은 1962 年에 初版된 것이니 지금부터 三年前의 著書이다. 그러나 美國 法學界에서 오늘날에도 이 冊은 널리 읽혀지고 있는 듯하다. 아니 새삼 더 널리 愛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合理的인 經營에 철저한 美國의 出版業者가 需要가 없는 冊을 2 年이 지난 昨年에 그 普及版(Paperbound edition)을 냈을 리가 없다. 이 書評은 評者가 가지고 있는 Bobs-Merrill 社가 出版한 普及版에 依한다.

評者가 빅클教授의 著書를 紹介함은 私的인 인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남다른 인연은 아니지만, 昨年 예일大學에서 行政節次法을 그의 밑에서 한 學期 동안 흥미있게 배운 일이 있다. 때로는 獨斷的인 듯 싶은 생각들도 있었으나, 예리한 全體的인 評價에 能했던 것 같은 그의 한 學期間의 강의를 들은 經驗이 이 書評에 評者의 편견의 原因이 될지도 모르겠다.

알렉산더 빅클(Alexander M. Bickel)教授는 하아바드法科大學을 卒業하고 美國法科大學의 優秀한 卒業生들이 그러하듯이 한 聯邦判事의 Law clerk 로서 法曹界生活을 始作했다. 한때는 年前에 別世한 聯邦大法院의 펠릭스 프랑크워터(Felix Frankfurter) 判事의 Law clerk 이기도 하였다. 프랑크워터判事 밑에서 일하는 동안에 黑白人統合教育을 爲한 世紀的인 憲法裁判인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判決을 도움기 爲한 그의 憲政史調查研究는 可히 Brown 判決의 理論的 根據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지금 예일法科大學에서 憲法, 行政法等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제는 學界의 大家로 손꼽히고 있다. 또 “New Republic”誌의 定期投稿者로서 一般 大衆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터이다. 評者의 빅클教授에 對한 인상은 日常의 對話나 講義室에서는 才談에 能하고 때로는 毒舌的인 듯도 하나, 紙面에 發表된 그의 意圖은 온건하고 均衡있는 듯 한 것이다.

이 冊은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란 副題를 가지고 있다. 美國의 大法院이 世界 어느 나라의 司法府보다 큰 힘을 가진 法院임을 알고 가장 놀라는 사람들은 美國사람들 自身인 것 같다. “法の 支配”(Rule of Law)가 그들 民主主義 制度의 바탕이 되는 原則이기는 하지만, 아홉 사람의 검은 法衣를 입은 老人들이 政治的 民主主義에 關한 最終的 評

價와 그 方向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健全한 民主的 生活方式를 營爲해 감에 必要한 마음 가짐이기도 하다. 빅클教授가 이 冊에서 다루는 問題가 바로 法律의 憲法的 審査에 있어서 “法的 支配”의 守護者로서의 美國大法院의 機能과 그것의 反民主政治的 要素를 調和시킬 수 있는 理論과 作用에 關한 것이다.

이 莫重한 힘을 가진 大法院의 機能도 憲法上的의 道그마(Dogma)로서만 說明하면, 法的 原則에 따라서만 判斷作用을 하게끔 된 極히 無難한 機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全體民主政治過程의 實際의 關係狀況(Context) 가운데 두고 보면, 엄청난 힘의 可能性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職業的 法律家中에서 게다가 政治的 配慮로 뽑힌 아홉 사람의 年老한 法律家들이 복잡한 選舉過程을 거쳐서 뽑힌 代議員들이 政治的 立法過程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法律을 違憲判決로 默殺해 버리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朕이 곧 法이다”라는 말을 연상함 직도 하다. 憲法의 原則에 비추어 判斷하고 人間의 理性을 通하여 하는 判斷이니 安心해도 좋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憲法의 原則들은 누구에게나 明白하며, 人間의 理性이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일까? 빅클教授는 이에 對해서 적어도 懷疑의이고, “原則”과 “理性”이라는 莫然한 몇마디의 말로 저 莫重한 大法院의 힘을 감싸오던 從來의 “理論”들에 도전한다. 그러면서도 “便宜”와 無節調한 “妥協”에 바쁜 政治的 冒險 가운데서 社會 價値의 安定된 堡壘로써 法院의 位置를 認識한다. 빅클教授가 大法院의 機能을 政治的 무대(at the bar of politics)에 올려 놓고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 問題를 社會의 實際秩序라는 하나의 關係狀況(context)에서 다루려는 것인 듯 하다.

1803年 Marbury v. Madison 判決에서 존 마아살判事가 聯邦大法院의 法律審査權을 내세운 以後 美國의 大法院은 憲法의 守護者가 되어 왔다. 聯邦大法院의 이와 같은 地位는 憲法典에 明文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後世의 判例法과 理論에 依해서 正當化될 수 있을 뿐이었다. 빅클教授는 著書의 第1章, 2章, 3章에서 1803年以後 지금까지 主張되어 온 여러가지 理論들을 分析해 본다. 바로 이 違憲審査權의 創始者인 마아살判事의 三段論的인 理論으로부터 現在의 허어버트 워슬러教授의 法院의 中立論에 이르기까지에 批判을 加한다.

마아살判事는, 憲法은 國家의 法秩序의 最上位 規範이어서 그에 違背된 法律은 當然히 效力이 없는 法律이니 法院은 그에 拘束을 받지 않을 것이고, 上位規範인 憲法에 따라야 할 터이니, 法院은 그 앞에 놓인 事件에 關한 限 規範의 相衝 與否를 審査해야 하고 또한 權限이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서 빅클教授는 마아살判事가 看過한 問題가 있음을 指摘한다. 即 法律의 違憲與否는 恒常 自明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다고 政治的 決定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은 것임을 指摘한다. 따라서 重要한 問題는 누가 그 決定을 할 것인가이라고 한다. 마아살判事는 法律을 만든 立法府가 다시 自己行爲의 合憲與否를 決定하도록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背水の陣을 치지만, 빅클教授는 法院도 憲法에 依해서 비로소 存在하는 機關인 點에서 憲法에 對해서 立法府와 質的으로 다른 點이 무엇인가고 反問한다. 빅클教授는 美國大法院의 違法審査權의 成立은 法理上의 必然이라기보다 하나의 歷史的 偶然事(“Historical Accidents”)라 하는 것이 더 妥當하리라고 結論한다. 더 큰 課題는 그것을 美國의 憲政史에서 取해진 하나의 選擇이라 생각하고, 오늘의 制度로서의 正當性을 確立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오늘의 制度로서의 正當性을 確立함에 있어서 難題는 그것이 政治的 民主主義의 行爲基準인 多數決의 原則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빅클教授는 말한다. 빅클教授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反多數的 勢力”(“Counter-Majoritarian Force”)이다. 國會의 多數者가 贊成해서 制定한 法律을 “아홉 명의 老人들”이 無效하게 해버리는 것이 民主主義의 政治秩序의 異端要素임은 쉽게 理解될 듯하다.

이와 같은 法院의 反民主的 機能을 爲해서 흔히 내세우는 辯論은, 多數決의 原則은 때로 어리석고 無謀한 判斷을 拓來할 때가 있어서, 眞正한 價値와 賢明한 判斷은 學識과 經驗이 있는 法律家들의 조용한 理性的 審理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빅클氏는 이런 一般論으로 有權者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선 이는 投票場의 有權者들은 社會의 價値에 盲目的이고 法官들은 언제나 賢明한 判斷을 한다는 것을 假定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批判한다. 빅클教授도 訴訟節次의 特殊性, 法官들의 學的 職業의 背景, 社會의 法院에 對한 態度 등으로 因해서 法院에 依한 裁判行爲가 政治的 妥協方法보다는 原則과 價値를 彰달하는 데는 優越한 機能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을 認定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可能性인 것이고 眞正 價値가 彰달되고 原則이 지켜지는가는 具體的인 狀況에서의 法院의 實際作用에 關해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點에서 그의 著書가 몇 가지 굽직한 法理的 도그마로서 이 問題를 다루어 온 從來의 學說들과 그 論究의 方向을 달리 한다.

大法院의 法律審査作用의 實際 分析을 하기 前에 著者は 從來의 理論들을 批判한다. 우선 빅클教授는 J.B. Thayer의 所謂 “明白한 誤謬”(Clear Mistake)의 理論으로부터 始作한다. Thayer는 嚴格한 三權分立의 確立을 前提로 해서, 法院은 “合理的으로 [생각해서] 疑心의 餘地없는 “明白한” 違憲行爲를 立法府가 한 경우에만 法律의 司法的 審査를 할 것이고, 그 限에서 法院의 法律審査權은 正當하다고 한다. 빅클教授는 이 理論이 實際에 當해서 얼마나 素朴한 것인가를 밝히려 한다. 도대체 憲法條文의 文言이 恒常 一定한 뜻으로만 解釋될 수 없는 것이고, 또 “明白”한 違憲 判斷의 基準으로 내세운 “合理性”(rationality)이란 具體的인 경우에 問題解決의 基準이 되기에는 너무나 莫然한 것임을 指摘한다. 가령 政府가 어떤 福祉 事業을 遂行하려 할 때 그로 因한 個人의 私權侵害와 그 國家事業과를 어떻게 調節할 것인가를 決定함에 있어서, “合理的 調節”(“rational accommodation”)이어야만 合憲的이라고 해 보

있자 그것이 도대체 具體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는지는 如前히 막연하지 않는가. 이런 경우에 法院의 判斷은 結局 政府가 取한 그 調節措置가 “옳은”(“good”) 것이었느냐에 關한 “價値選擇”(“Choice of values”) 行爲임을 直視해야 한다고 빅클氏는 말한다. 따라서 憲法裁判을 憲法典의 “解釋”(“Construction”)이라고 얼버무려 두는 것보다 솔직히 審判者의 “價値選擇” 行爲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어떤 具體的인 경우에 어떤 價値를 選擇할 것인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말하면 具體的인 경우에 있어서 裁判官의 判斷基準이 될만큼 明瞭한 價値의 處方を 提示하는 것은 자칫 하면 막연한 “合理性”에 依持하는 것보다 더 큰 冒險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現在 컬럼비아法科大學의 허어버트 웨슬러(Herbert Wechsler)教授는 이런 難關을 認識하고 차라리 法院의 中立을 主張한다. 웨슬러教授는 서로 다투는 價値와 利益들은 政治的 民主主義秩序만 保障되면 立法府와 行政府의 政策決定에 反影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少數人들이 社會全體의 價値基準을 定立하게 되는 危險을 避하는 길이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反多數的 勢力”인 法院은 “中立的”이어야 한다고 論한다. 덧붙여 웨슬러教授는 오늘의 社會의 價値와 利益을 超越하는 不變의 “原則”에 따라서 “中立”을 지킬 것을 勸告함으로써 그의 “中立”의 概念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式的 空虛한 것이 아님을 說明한다.

그러나 빅클氏는 위와 같은 웨슬러教授의 理論에 몇 가지 難點이 있음을 指摘하고 自身의 생각을 提示한다. 卽 裁判이 裁判官의 個人的인 好·不好에 따른 價値選擇行爲여서는 【안된다는 消極的인 뜻에서 “原則”에 立脚하고 目前의 利害關係에 “中立的”이어야 함에는 同意하나, 具體的으로 어떤 “原則”이 立法府에서 取해진 價値選擇行爲를 審査하는 基準이 될 것인가는 如前히 解答안되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가령 웨슬러氏는 黑白人分離教育法들을 憲法의 平等의 原則에 어긋나는 法律로써 違憲判決을 함은 “原則”에 따른 “中立的” 判決이 아니라고 主張한다. 그 까닭은, 分離教育으로 黑人들이 不平等한 待偶를 받는다고 原告가 主張함은 黑人들 自身이 劣等意識을 가지고 있는 때문이고, 分離教育自體가 平等의 原則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니, 大法院이 平等의 原則으로 原告의 主張을 支持함은 “中立的” “原則”에 基한 “判決”이 아니라는 것이다. 웨슬러教授는 憲法의 集會의 自由 規定이 이 判決의 基礎로써 보다 妥當한 “原則”이었을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에 對해서 빅클氏는 다음과 같이 批判한다. 卽 大法院이 그런 種類의 事件에 平等의 原則을 내세운 것은 教育 등의 社會參與에서 黑人들이 不平等한 待偶를 받고 있는 明白한 社會事實을 그 價値選擇의 經驗的 [根據로 삼은 것이고, 웨슬러教授야 말로 이 社會의 實際의 關係狀況 밖에서 “原則”을 云謂함으로써 그 自身만의 어떤 價値基準으로써 平等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한다.

違憲審査를 하는 大法院의 裁判이 價値選擇行爲임을 말한 빅클教授는 此際에 法院이 選擇하는 그 價値는 “社會의 不變하는 價値”(“enduring values of society”) 임을 말한다. 價値가

서로 優劣을 다루는 경우, 法院은 中立을 지키거나 社會를 超越한 價値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中 어떤 것을 擇하고 그 “結果”가 곧 “價値” 또는 “새 價値”가 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리고 法院이 民主的政治過程에서 意義있는 附加的 價値 창달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目前的 “便宜”와 安易한 利害調節에 영향을 받지 않고, 社會全體의 一般的이고 長期的인 要請에 附合할 때이라고 主張한다. 司法的 判決行爲가 “原則的 節次”(“principled process”)에 따라서 이루어짐이 위와 같은 法院의 價値守護를 保障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빅클教授가 價値의 階層을 想定하고 있음을 推測할 수 있다. 目前的 “便宜”의 妥協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價値選擇과 社會의 一般的 長期的 要請에 對應하는 價値의 優劣을 想定하고 있는 듯하다. 두 가지의 다른 決定過程(Decisional Process) 即 政治와 法院의 裁判行爲에 依해서 推進되는 價値를 그 決定過程들의 關係狀況 가운데서 具體的으로 어떻게 다른지 實證하지 않고, 하나는 “便宜”, 다른 하나는 “價値”라는 말로 表現하는 것만으로는 어찌서 法院의 裁判行爲가 社會에 一般的 長期的 要請에 符合하는 價値 창달의 附加的 機能을 하는가 하는 疑問에 科學的인 解答을 줄 수 없다. 이 疑問을 마음 속에 가지고 빅클氏가 說明하는 法院의 法律審査機能의 節次를 보기로 하자.

著者は 美國의 法院이 法律審査에 當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決定을 할 수 있음을 重要 視한다. 即 違憲判決을 하거나, 合憲宣言을 하거나(“Legitimate”), 또는 本案審理를 拒否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著者は 法院의 이 세 제번 機能이 “價値”와 “便宜”의 갈등 가운데서 法院으로 하여금 그 本來의 姿勢로 버티나가게 하는 秘方이라고 한다. 빅클教授는 社會의 事件들이 어떤 것은 尙혀 “原則”의 問題이고, 어떤 것은 全的으로 “便宜”의 問題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함을 너무 素朴하다고 본다. 法院이 法律의 司法的 審査의 要請을 받고 그 違憲 與否에 關해서 아무런 意見도 發表하지 않음은 尙불리 政治的 “便宜”에 誘引되는 危險을 豫防하는 길이기도 하고, 同時에 莫然한 “價値” 또는 原則이란 美名下에 少數者의 私見을 強要함으로써 民主政治秩序의 妥協과 調整의 機會를 박탈해 버리는 어리석음도 避할 수 있는 길이라고 主張한다. 그래서 빅클教授는 法院의 이와 같은 機能을 “不作爲의 美德”(“passive virtues”)이라고 부른다. 美國의 大法院이 憲法問題에 關한 諮問的 意見發表를 사양하고, 만드시 “事件과 紛爭”(cases and controversy)에 當해서 法律의 司法的 審査를 하는 것부터 莫然한 價値判斷을 避하게끔 하는 制度라고 한다. 即 立法이 있은 後에 時間이 經過하고 그 立法이 社會에 作用해서 紛爭과 事件이 일어날 무렵이면 그 法律에 對한 社會의 輿論과 態度도 相當히 具體化되어서 大法院이 違憲與否審査를 함에 價値判斷의 經驗的 資料를 充分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實際의 事件과 紛爭에 關聯해서 立法行爲를 審査함은 그 法律을 立法府가 보는 것과 다른 觀點, 即 그 法律이 具體的인 事件에 適用된 狀況에 限해서 審査함으로써 立法府의 多數者의 意思와 法院의 機能이 서로 衝突하지 않고

調節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立法의 時點과 裁判의 때와의 時間에 새로운 妥協과 調整의 機會를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當事者 適格과 비슷한 英美法의 Standing의 法理도 法院의 具體的이고 客觀的인 價値判斷을 保障하는 節次上의 原則이 될 수 있음을 說明한다. 가령 한 放送業體의 放送免許를 政府가 取消한 경우에 失職을 하게 된 아나운서나 그 放送局의 廣告主나 營業主나 또는 시청자들은 모두 法的 概念上의 “利害關係人”일 것이지만, 그 중 누구에게 果然 Standing이 있다고 認定해서 取消行爲의 違法性을 다투는 訴訟提起를 許諾하느냐에 따라서 法院이 그 訴訟에 當해서 하는 價値判斷의 經驗的客觀性이 左右됨을 主張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訴訟을 提起한 原告에게 Standing이 없다고 그 訴를 却下함으로써 그 問題를 다시 한번 民主政治의 討論과 妥協의 場으로 보내서 社會의 좀더 慎重하고 具體的인 價値發表를 기다리는 法院의 “不作爲의 美德”을 實踐하는 方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한 醫師가 커네티컬州의 反避妊法 때문에 身體 虛弱한 妊娠婦에게 避妊劑를 處方치 못하여 그의 仁術을 遂行할 수 없다는 被害理由로 커네티컬州의 反避妊法의 違憲判決을 求한데 對해서 聯邦大法院이 이 醫師에게는 standing이 없다는 理由로 訴의 却下를 한 *Tileston v. Ullman* 判決을 빅클教授는 大法院이 그 “不作爲의 美德”을 適切히 지킨 좋은 例로 내세운다. 即 그 避妊法의 制定이나 廢棄는 社會의 宗教的 道德的關心의 對象이니 政治的 決定過程에 한번 더 討論의 機會를 주는 것이 妥當하리라는 것이다. 또 커네티컬州民이 언젠가는 反避妊法에서 解放되더라도 그들 스스로 그것을 爭取하는 것이 훨씬 意義있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 以外에도 빅클教授는 大法院이 法律의 司法的 審査에 當해서 그 “不作爲의 美德”을 지키는 方法으로써 所謂 “政治的 問題” (“political question”)는 司法審査의 對象이 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 그리고 또 大法院의 任意的 管轄權(certiorari) 行使에 依한 取捨選擇 등을 든다.

以上 우리는 “The Least Dangerous Branch”라는 著書에 실린 빅클教授의 생각의 줄거리만은 더듬어 본 듯하다. “反多數的 勢力”으로서의 法院이 하는 立法行爲의 司法的 審査는 다름 아닌 價値選擇行爲이고, 이 價値選擇行爲가 民主主義 政治秩序에 容納될 수 있는 것은 社會의 一般的이고 長期的 價値를 保護함으로써 “便宜”(“expediency”)가 흔히 支配하는 政治過程에 價値保護라는 附加的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法院의 違憲判斷을 “價値 選擇”行爲로 봄으로써, 法官들의 裁判行爲를 憲法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明若觀火한 原則의 “合理的” 推理라고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態度를 警戒하고, 저 重大한 法院의 作用을 社會의 實際秩序와 具體的인 人間行爲의 關係狀況 가운데서 다루어야 한다는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이런 試圖는 法學으로 하여금 dogma의 註釋術 또는 形而上的 說教에 그치게 하지 않고 經驗的 資料 위에 科學的 實證方法을 適用해서 人間行動의 具體的인 基準을 論究해 낼 수 있는 社會科學이 되게끔 하는 첫 段階의 概念規定들이다. 그리고 또 Standing, 任意的 管

轉權, “政治的 問題” 등의 概念을, 民主的 政治過程에 對處하여 法院의 價値判斷의 客觀的이고 經驗的인 資料를 얻게 하고, 市民의 民主力量을 장려하게 하는 法院의 不作爲의 美德을 지켜나가게끔 하는 節次的 制度로 보는 것은 이 著書가 처음으로 論究한 재미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빅클教授의 著書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의 概念規定들이 우리 思考의 大體的인 윤곽은 提示해 주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科學的인 處方이 내려질만큼 體系化되어 있지는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빅클教授가 말하는 價値選擇의 關係狀況(Context)은 科學的인 價値규명의 經驗的 틀이 될만큼 明瞭하지 않다. “社會”의 價値라고 하지만 具體的인 경우에 이 “社會”란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은 전혀 讀者에게만 맡겨져 있다. 위에서도 잠시 言及한 바이지만 “便宜”란 말의 意義도 모호하다. “價値”란 말과 對比해서 쓰이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만으로서 는 法院이 日常의 政治過程보다는 “價値” 保護를 慎重하게 할 수 있는 機構라는 常識論以上 더 나아갈 수 없다. 빅클教授가 “便宜”라고 본 어떤 政策決定 行爲가 眞正 社會의 一般的이고 長期的인 要請에 符合하는 “價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大法院은 個個의 事件에서 “價値”를 어떻게 明證(clarify)하고 어디까지 “不作爲의 美德”을 지키고, 언제 價値保護에 나설 것인가? 立法後에 時間이 經過하고 또는 가장 가까운 利害關係人이 原告가 되면 어째서 法院의 價値규명이 더 客觀的이 되는가? 또 빅클教授는 法院이 “不作爲의 美德”을 遂行함으로써 法院과 大衆의 政治過程間에 “對話”(colloquy)의 길이 열려서 法院의 “反多數的” 要素를 中和할 수 있다는 “希望”을 表示하지만, 이 “對話”는 果然 무엇을 意味하며, 어떻게 裁判官들에게 作用하는가를 究明하고 있지 않다. 社會의 權力的 政策決定 過程(Decision-making process) ——法院을 包含한——에 關한 論究를 위한 우리 研究의 科學的인 Frame of Reference 로서는 너무 一般的인 것이다. 빅클教授가 이 著書에서 使用하고 있는 어휘에 比喩的인 것이 너무 많은 탓도 있겠다. 가령 colloquy(對話)라는 한 마디로 그 複雜한 法院과 社會의 相互作用을 讀者에게 그의 뜻대로 傳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錯誤요 失手다. 빅클教授의 이와 같은 比喩的 어휘의 愛用은 이 著書에서 뿐만 아니라 講義室에서나 다른 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不足에도 不拘하고 이 冊을 읽고난 後 많은 새로운 問題點들을 暗示하고 있는 듯한 讀後感은 評者가 읽은 最近에 出版된 이 分野의 著書에 比해서 훨씬 더 깊은 듯하다.